

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(제4조 관련)

1. 일반결합

가.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

나. 고혈압성 응급증

2. 비강(鼻腔)·구강·인후기관 계통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·구강·인후·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

3. 흉부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

4. 심장·혈관 및 순환기 계통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

5.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

6. 생식비뇨기 계통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

7. 내분비 계통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

8. 혈액 또는 조혈 계통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

9. 신경 계통

가. 뇌졸중(腦卒中)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
나.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
다. 만성 진행성·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(腦脊髓炎)[유전성 무도병(舞蹈病: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), 근위축성 측색경화증, 소뇌성운동실조증(小腦性運動失調症)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]

라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

1) 뇌종양 및 척수종양

2) 외상성 신경질환

3) 말초신경질환

4) 전신성의 신경근(神經筋) 접합부 질환

5)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

6) 뇌전증(腦電症)(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)

10. 팔다리

가.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(어깨·팔·손) 장애

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

11. 귀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

12. 눈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, 시야 장애,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

13. 정신 계통

가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

나.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

비고

1.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,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(이하 "마약류 검사"라 함)를 실시해야 한다.

2.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